
민중당 당헌

〈2017.10.15. 제정〉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당원

제3장 대의기관

제4장 집행기관

제5장 고문단

제6장 중앙위원회 직속기관

제7장 원내기구

제8장 정책연구소

제9장 지역조직

제10장 공직선거

제11장 포상과 징계

제12장 재정

제13장 보칙

부칙

별첨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① 우리 당의 명칭은 ‘민중당’이라 한다.
- ② 당명의 영문 표기는 ‘The Minjung Party’로 한다.

제2조(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의 정강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및 운영)

- ① 우리 당은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군구에 지역위원회를 둔다. 단,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달리 둘 수 있다.
- ② 우리당의 당권은 당원에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 ③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당원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과 토론으로 결정하는 디지털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속의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제2장 당원

제4조(당원)

- ① 우리 당의 정강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에 의거하여 당원이 될 수 있다.
- ②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가.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 나.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 다.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
 - 라. 당원의 권리침해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마. 당의 선출직 당직자 및 공직자의 소환을 요청할 권리
 - 바. 당의 정책과 활동에 대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리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가.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의 결정과 방침에 따를 의무
- 나.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 다. 청렴과 품위 유지 의무
- 라. 당의 교육 및 활동에 참여 의무
- 마. 당비납부의 의무

③ 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당원은 권리가 제한될 수 있고, 권리 제한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당원총회)

① 중앙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당원총회를 한다.

- 1. 당 상임대표 및 대표단의 선출
- 2. 당 대의원대회가 제출한 안건

②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및 계급계층조직은 당원총회를 할 수 있다.

③ 당원총회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당원총회는 당원총투표로 갈음할 수 있고, 당원총투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계급계층조직)

① 계급계층조직은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학생 등 계급계층 별로 구성한다.

② 계급계층조직은 중앙·시·도·현장조직(사업장 또는 지역)-기초조직(분회)의 체계로 운영한다.

③ 계급계층조직은 당연직 대표단이 되는 해당 계급계층조직 대표선출 권한, 배분된 재정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 배분된 정원에 대한 인사제청 권한을 가진다.

④ 계급계층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분회)

① 분회는 우리 당의 기초조직으로 당원의 생활과 활동의 공동체 역할을 한다.

② 분회는 계급계층조직 현장조직 또는 지역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치한다.

③ 분회는 지역, 직장, 학교, 의제, 취미 등 다양한 매개를 활용하여 관계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구성한다.

④ 분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출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제10조(장애인당원의 지위와 권리)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출직에 장애인 당원 5% 이상을 할당한다.

제3장 대의기관

제1절 대의원대회

제11조(지위와 구성)

① 대의원대회는 우리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②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고문
2. 상임대표 및 대표단, 계급계층조직 중앙 대표
3. 국회의원
4. 지방자치단체장
5. 지방의회의원
6.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계급계층조직 시·도 대표 및 부대표
7. 지역위원장, 계급계층조직 현장조직 대표
8. 선출직 대의원

③ 선출직 대의원은 분회장과 일반당원을 5:5 비율로 구성하되, 선출직 대의원의 총수 및 선출방법과 선출기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

① 대의원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대회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제13조(권한)

①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의 제정과 개정

2. 당헌의 제정과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의결
 4. 중앙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 의결
 5. 당의 중요 정책 결정
 6. 기타 중요한 결정
- ② 대의원대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소집)

-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2년에 한번 6월 이내에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앙위원회 의결로 90일 한도 내에서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 ② 임시대의원대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대의원대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중앙위원회

제15조(지위와 구성)

- ①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의 대의기관이다.
-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상임대표 및 대표단, 계급계층조직 중앙 대표
 2. 국회의원
 3. 지방자치단체장
 4. 지방의회의원
 5. 사·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계급계층조직 사·도 대표
 6. 선출직 중앙위원
- ③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역위원장 및 계급계층조직 현장조직 대표와 일반당원으로 구성하되, 선출직 중앙위원의 총수 및 선출방법과 선출기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④ 중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중앙위원회 의장과 부의장)

- ① 중앙위원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 ② 중앙위원회 의장은 상임대표가 맡고, 부의장은 대표단에서 맡는다.

제17조 (권한)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2. 당헌, 당규의 해석
3.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4. 당헌당규에 따른 당직자 인준
5. 공직 후보 인준
6. 사·도당 창당·개편·해산 승인
7. 계급계층조직 설치 승인
8.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9.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 발의
10. 대표단에서 제출한 안건 의결
11. 주요 사업과 정책 방침 수립
12. 기타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권한

② 중앙위원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표단에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소집)

① 정기 중앙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한다.

② 임시 중앙위원회는 대표단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중앙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중앙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상임대표

제19조(상임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 상임대표는 우리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한다.

② 상임대표는 대표단을 소집하여 당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상임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무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2. 중앙위원회의 소집과 의사 진행
3. 집행기관의 장의 임면
4. 당직자에 대한 임면
5.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6. 기타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권한

제20조(선출)

- ① 상임대표는 권리당원 과반수 참여와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과반 미달 시 다득표자 2인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 ② 상임대표가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당원직선으로 후임자를 선출한다.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1조(임기) 상임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2조(상임대표 권한대행)

- ① 상임대표가 궐위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하여 당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대표가 지명하고 대표단에서 인준한 공동대표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② 상임대표가 권한대행을 지명하지 않는 때에는 7일 이내에 대표단에서 상임대표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제2절 대표단

제23조(지위와 구성)

- ① 대표단은 당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 ② 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상임대표, 원내대표
 2. 계급계층조직 대표
 3. 일반대표 3명
- ③ 대표단은 상임대표가 의장을 맡고, 상임대표가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대표가 지명하는 공동대표가 맡는다.
- ④ 대표단 직무수행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4조(권한)

- ① 대표단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일상적 당 사업과 정책의 의결 및 집행
 2. 당무위원회에 제출할 안건 의결
 3.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안건 의결
 4.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안건 의결
 5.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 의결사항 집행
 6.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의안의 사전 심의·의결
 7.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8. 기타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권한
- ② 대표단은 그 권한의 일부를 상임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선출)

- ① 일반대표는 계급계층조직에 속하지 않는 권리당원 과반수 참여와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 ② 계급계층조직 대표는 해당 계급계층조직 소속 권리당원 과반수 참여와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과반 미달시 다득표자 2인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 ③ 대표단이 과반수 결위되는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임기) 대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7조(소집)

- ① 정기 대표단 회의는 주1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 대표단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대표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즉각 소집한다.

제3절 당무위원회

제28조(지위와 구성)

- ① 당무위원회는 전 당적 집행 보장을 위한 집행기관이다.
- ② 당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표단
 2. 사·도당 위원장
- ③ 당무위원회는 회의소집과 운영을 위해 1인의 의장과 1인의 부의장을 둔다. 상임대표가 의장을 맡고, 상임대표가 지명하는 공동대표가 부의장을 맡는다.

제29조(권한)

- ① 당무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대표단이 제출한 안건의 의결 및 집행
 - 2. 기타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권한
- ② 당무위원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표단에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소집)

- ① 정기 당무위원회는 월1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 당무위원회는 대표단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당무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4절 사무총국

제31조(사무총국)

- ① 당의 조직관리와 일상업무의 집행을 위해 중앙당에 사무총국을 둔다.
- ② 사무총장은 상임대표가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③ 사무총국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정책위원회

제32조(정책위원회)

- ① 당의 정강정책 연구 및 개발, 입안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 ② 정책위의장은 상임대표가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③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절 디지털 소통위원회

제33조(디지털소통위원회)

- ① 당원의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술적 보장을 위해 디지털소통위원회를 둔다.
- ② 디지털소통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③ 디지털소통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절 중앙교육원

제34조 (중앙교육원)

- ① 당원 교육과 당 간부 양성을 위해 중앙교육원을 둔다.
- ② 중앙교육원장은 상임대표가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③ 중앙교육원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절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35조(상설위원회)

- ① 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상설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③ 상설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6조(특별위원회)

- ①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은 활동기간을 명시하여 대표단에서 정한다.
- ② 특별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임면하고 대표단에서 인준한다.

제5장 고문단

제37조(고문단)

- ①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상임대표가 위촉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③ 고문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장 중앙위원회 직속기관

제38조(중앙윤리위원회)

-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최고기관으로 중앙윤리위원회를 두며, 그 하급기관으로 시·도당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윤리위원회와 시·도당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대표가 임면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④ 시·도당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임면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⑤ 중앙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9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 ①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하급기관으로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대표가 임면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④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임면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의 구성 및 권한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0조(중앙예산결산위원회)

-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결산과 업무를 심의·감사하는 최고기관으로 중앙예산결산위원회를 두고, 그 하급기관으로 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예산결산위원회와 시·도당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중앙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대표가 임면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④ 시·도당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임면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 ⑤ 중앙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41조(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2조(권한) 의원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원내대표의 선출
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인준
3. 국회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선출
4.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배정
5. 원내 대책 및 원내 전략 심의·의결
6. 당 의사결정기구의 원내 활동 방침 집행
7.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의안의 심의·의결
8.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및 폐지

9. 정당법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
10. 기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2절 원내대표

제43조(원내대표)

- 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원내대표는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며, 원내 주요 회의를 주재한다.
- ④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가 추천하여 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⑤ 원내부대표는 약간 명으로 하고, 원내대표가 지명한다.
- ⑥ 원내대표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배정한다. 이 경우 국회상임위원회 간사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호선한다.
- ⑦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 ⑧ 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무위원회나 대표단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실시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원내대표는 해임된다.
- ⑨ 원내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재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원내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원내대표를 재선출할 때까지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원내대표의 선출과 불신임투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4조(원내행정기구)

- ① 원내 대책, 입법 및 정책 활동의 기획과 행정지원을 위해 원내행정기구를 둔다.
- ② 원내행정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장 정책연구소

제45조(정책연구소)

- ① 당의 정강정책의 연구 개발을 위하여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둔다.
- ②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 ③ 연구소의 이사장은 상임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은 상임대표가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지역조직

제1절 시·도당

제46조(지위와 구성)

- ① 시·도당은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과 지역위원회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 ② 시·도당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계급계층조직 시·도 대표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 ③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 ④ 시·도당의 설치와 운영 등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7조(대의원대회)

- ① 시·도당대의원대회는 시·도당의 최고 대의기관이며 다음의 같이 구성한다.
 1. 해당 시·도당 소속 중앙당 대의원
 2. 해당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대의원
- ② 시·도당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지닌다.
 1. 시·도당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시·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시·도당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4. 시·도당의 윤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각 위원장과 위원 인준
 5. 시·도당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른 권한
- ③ 시·도당의 위원장이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되며,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거나, 재적대의원 3분의1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30일내에 즉시 소집해야 한다.
- ④ 기타 대의원대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당의 규약에 따른다.

제48조(운영위원회)

- ① 시·도당운영위원회는 시·도당대의원대회 다음의 대의기관이며 다음의 같이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계급계층조직 시·도 대표
 2. 지역위원장
 3.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 ② 시·도당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지닌다.
 1.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2.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 발의

3. 지역위원회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 판정과 직무대행 선임
 4. 위원장단에서 제출한 안건 의결
 5. 규칙의 제정과 개정
 6.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 ③ 시·도당의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의장이 되며, 정기 운영위원회는 월1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단의 결정이 있거나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즉시 소집해야한다.
- ④ 기타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당의 규약에 따른다.

제2절 지역위원회

제49조(지위와 구성)

- ① 지역위원회는 시·군·구에 설치하며 해당 시·군·구 소속 당원을 총괄하며 대표한다. 단, 지역위원회는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인근 시·군·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분할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역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 ③ 지역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이를 총괄한다.
- ④ 지역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0조(대의원대회)

- ① 지역위원회대의원대회는 지역위원회 최고대의기관이며 다음의 같이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중앙당 대의원
 2. 해당 지역위원회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대의원
- ② 지역위원회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지닌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 ③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되며,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 결정이 있거나, 재적대의원 3분의1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30일내에 즉시 소집해야 한다.
- ④ 기타 대의원대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에 따른다.

제51조(운영위원회)

- ①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일상적 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지역위원회 소속 단체장 및 지방의원

3. 지역위원회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 ②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원총회 및 대의원대회 의결 사항 집행
 2. 지역위원회 일상 사업 의결 및 집행
 3. 지역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4. 지역위원회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른 권한
- ③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월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10장 공직선거

제52조(각급 공직후보자 선출)

- ① 각급 공직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소속 권리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단,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 ② 각급 공직후보자는 중앙위원회 의결로 당원 이외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 ③ 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의 경우는 대표단의 의결로 공직후보자 선출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 ④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 등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3조(각급 공직후보자 인준)

- ① 각급 공직후보자는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② 중앙위원회는 인준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공지해야 한다.

제11장 포상과 징계

제54조(포상과 징계)

- ① 당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당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 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③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표단에서 결정한다.
- ④ 징계의 사유와 종류는 당규로 정하며, 당원 징계 여부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12장 재정

제55조(구성)

- ① 당재정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 ④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 ⑤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6조(예산과 결산)

- ① 당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 ②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③ 당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 ④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장 보칙

제57조(회의의 소집과 의사)

- ① 각급 회의는 당헌과 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급 회의 구성원 재적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의장이 소집을 안 하는 경우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발의자가 소집한다.
- ② 각급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단, 재적 1/3 이상 참석으로 개의회할 수 있다.
- ③ 각급 회의의 의장은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의제를 각급 회의 구성원 참석의 편의를 고려하여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 ④ 각급 회의의 의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의장의 제지에 불응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⑤ 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8조(의결정족수)

- ① 강령 및 당헌의 제정 및 개정, 합당안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1/3이상 발의,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9조(국회의원의 제명)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은 의원총회의 권한에 해당하며, 소속 국회 의원 전원의 3분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0조(표결)

- ①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 ② 제①항의 의안을 제외한 모든 의안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해 의결할 수 없다.

제61조(정무직당직자의 임기) 상임대표가 임명하거나 대표단 의결로 선임한 정무직당직자의 임기는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해당 상임대표와 대표단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2조(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 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에 대한 취소 사유와 절차 등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3조(합당과 해산, 청산)

-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라 수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 ③ 시·도당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시·도당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제64조(대표자변경과 합당시의 법정서류 및 인장의 인계)

-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서류 및 정당 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② 법정 서류와 정당 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와 인계 절차 등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당헌은 2017년 10월 15일 합당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당헌 개정에 관한 특례) 대의원대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당규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특례) 중앙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되기 전까지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

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제4조(경과 규정) 2018년 지방선거 이후 3개월 이내에 동시당직선거를 진행한다. 그 전까지 당헌·당규에 따른 각급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의 구성 및 운영은 '과도기 운영방안'에 따르며, 시·도당은 개편대회 또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규약제정 및 집행기관 개편을 할 수 있다.

※ 별첨 1

민중당 과도기 운영방안

1. 민중당은 단결의 관점에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공동대표제로 운영한다.

- 중앙당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 ① 양당의 대표로 10인 내외(8인~12인)의 공동대표를 두고, 2인의 상임대표를 둔다.
- ② 민중당에 추가로 참여하는 세력과 개인 중에서도 공동대표를 할 수 있다.
- ③ 민중당의 중앙당 집행부는 참여하는 세력 간의 균형 있는 인사가 되도록 하고, 공동대표가 협의하여 구성하며, 이후로도 공동 집행부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 시·도당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 ① 시·도당은 2인의 상임위원장과 약간 명의 공동위원장을 둔다. 단, 시·도당별로 합의가 있을 시 이를 우선한다.
- ② 민중당에 추가로 참여하는 세력과 개인 중에서도 공동위원장을 할 수 있다.
- ③ 민중당의 시·도당 집행부는 참여하는 세력 간의 균형 있는 인사가 되도록 하고, 해당 시·도당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구성하며, 이후로도 공동 집행부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 ① 지역위원회는 당원 5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시군구를 기본으로 하되 인근 시군구를 통합하거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운영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는 2인의 상임위원장과 약간 명의 공동위원장을 둔다. 단, 지역위원회별로 합의가 있을 시 이를 우선한다.
- ② 민중당에 추가로 참여하는 세력과 개인 중에서도 공동위원장을 할 수 있다.
- ③ 민중당의 지역위원회 집행부는 참여하는 세력 간의 균형 있는 인사가 되도록 하고, 해당 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구성하며, 이후로도 공동 집행부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 계급계층조직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 ① 계급계층조직은 계급 계층별로 구성하고 해당 계급계층의 요구에 맞게 중앙 및 시·도, 그리고 그 산하 조직을 구성한다. 단, 계급계층조직에 참여하는 단위 별로 합의가 있을 시 이를 우선한다.

② 민중당에 추가로 참여하는 세력과 개인 중에서도 계급계층조직의 중앙 및 시·도, 그리고 그 산하조직의 공동 대표를 할 수 있다.

③ 계급계층조직의 집행부는 참여하는 세력 간에 균형 있는 인사가 되도록 하고, 해당 단위의 공동대표들이 협의 하여 구성하며, 이후로도 공동 집행부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2. 민중당의 당원 소속 및 편제는 다음과 같다.

① 모든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계급계층조직과 지역위원회에 소속한다.

② 당원의 소속 계급계층조직은 계급계층을 기준으로 하나의 조직에 소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당원의 소속 지역위원회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나의 지역위원회에 소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당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주지와 사업장, 학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지역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다.

④ 위 ①항에 해당하는 계급계층조직과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 해당 시·도당에 직접 소속한다.

⑤ 당원은 당의 기초조직이자 생활과 활동의 공동체인 분회에 참여한다.

3. 민중당의 과도기 대의기구는 일원적 대의체제로 중앙위원회로 한다. 중앙위원회는 1:1로 구성한다. 상임대표의 합의로 추가로 참여하는 세력에게도 당비 내는 당원 100명당 1인의 중앙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 대의기구 성원의 임기는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첫 동시당직선거까지로 한다.

4. 민중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각급단위 지방선거(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일 이전에 후보를 조기 발굴하여 선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각급단위 지방선거 공직 후보의 경우 해당 선거구에 당적을 두고 있는 모든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 단, 지역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당에서 판단으로 다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 내의 당원이 없는 지방의원 선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위원회 판단으로 다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단결의 관점으로 당을 운영하여 합당 당시 합의된 사항에 대한 개정 및 새로운 당규 제정은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그 외의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과반수로 의결한다.